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약관-089호(2026.09.10)

나라사랑 하나통장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「나라사랑 하나통장」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병무청에서 나라사랑카드 가입을 승인한 병역판정검사 수검(예정)자, 현역병/ 사회복무요원,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5조 이자지급

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(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), 최초 예금일(또는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(또는 지급일)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, 매월 세번째 금요일 다음 영업일(원가일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제6조 우대금리

① 이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하며, 우대금리는 상품설명서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
② 이 예금은 군급여 최초 입금월(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입대일이 속해있는 월)로부터 2년에 한하여 당월 군급여(국군재정관리단의 군인중앙급여이체,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급여[주1] 입금) 입금 실적 충족시 익월에 우대금리 연 2.4%를 제공합니다.

(주1)급여 인정기준 :

1.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   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, SALARY, PAY 등/ 등록직장명)
2. 회사에 의한 '급여코드'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
3. 손님이 '급여일'을 지정(등록)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

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

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

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이 예금의 가입 고객에게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)

수수료 항목	우대 내용
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	무제한 면제 ※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
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	
납부자자동이체, 타행자동이체 수수료	
타행 자동화기기* 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	
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	

*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,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(또는 ATM기)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(또는 ATM기)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제8조 상품전환

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이 예금으로 전환가능한 다른 예금은 저축예금, 주거래하나통장, 하나멤버스주거래 통장, Young하나 통장, 영하나플러스 통장, WINGO 통장 상품에 한합니다.

<부 칙>

이 특약은 2026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.
이 특약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이 특약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기가입 계좌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